승강기 안전! 국민행복 실현!

5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 지침



5
한국승강기안전공단 KOREA ELEVATOR SAFETY AGENCY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05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1 / 12

1. 목적

공단의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 및 관리하는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단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호구 중 고용 노동부장관의 안전인증 대상품이 되는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업무에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안전관리전담부서장(안전관리팀장)

안전·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조언·지도

3.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지사장)

- 1) 안전·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및 지급 등에 관한 확인
- 2)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3.3 관리감독자(팀장, 출장소장)

- 1) 필요 보호구의 파악 및 지급 요청
- 2)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적정량을 항상 구매·확보하여 비치, 보관, 지급
- 3) 소속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상태에 대한 감독 및 점검
- 4) 보호구 취급 및 착용방법에 대한 지도 및 교육

3.4 근로자

- 1) 지정된 장소에서 규정된 보호구를 착용
- 2) 지급받은 개인보호구의 청결상태 유지

4. 일반원칙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각각의 안전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업무 경력 6개월 미만 직원(근로자): 단독업무 금지
- 2) 관계법령에서 단독업무를 금지하는 업무: 2인 1조 업무 수행
- 3) 해당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높이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의 업무, 중 장비 사용 업무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작업지휘자 지정을 요구하는 업무: 작업지 휘자 지정

6
한국승강기안전공단 KOREA ELEVATOR SAFETY AGENCY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05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2 / 12

5. 개인보호구의 구매 및 지급

5.1 보호구의 구매

- 1) 관리감독자는 업무에 필요한 보호구현황을 파악하여 재고관리를 하여야 한다.
- 2) 작업에 적합한 안전인증을 받은 보호구를 구매하여 사용한다.
- 3) 관리감독자는 보호구 구입 시 법률에 따른 적격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5.2 개인보호구 구매 시 적격성 평가

안전관리전담부서 및 관리감독자는 개인보호구 구매 시 적절한지 적격성 평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개인보호구는 위험예방에 적합해야 하며 위험이 발생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의 조건들에 적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약에 대한 보호를 위해 고안된 보안경은 철이나 돌을 절단하기 위한 연마기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보안경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 2) 개인보호구는 근로자가 몸에 맞출 수 있도록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 3)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근로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데 필요한 시간, 작업을 하는데 요구되는 물리적 노력 그리고 시인성과 정보교환을 위한 필요사항 등을 알아야 한다.
- 4)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상태가 검사되어야 한다.
- 5) 한 종류 이상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면 그것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수한 형태의 호흡기 보호장비는 보안경을 착용하는 것을 어렵게 하 지 않아야 한다.

5.3 보호구의 지급

- 1) 신규 채용 및 검사 업무 변경 등 또는 교환 주기에 따라 필요로 하는 보호구(안전 모, 안전화, 안전그네 등)를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관리감독자는 지급한 보호구를 보호구 지급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3) 보호구는 개인 보호구 보관함에 보관하며 관리책임은 각 개인에게 있다.
- 4) 관리감독자는 담당 부서의 작업과 관련된 보호구현황을 상시 점검하여 훼손, 변형 및 오염으로 인한 사용 불가의 경우 즉시 교체해주어야 한다. 다만 구매 등의 사유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05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3 / 12

로 즉시 교체가 어려운 경우는 상비품으로 구매기간 내 대체 지급 할 수 있다.

- 5) 보호구는 그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변형시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6) 지급받은 보호구는 항상 청결하게 보관한다.

6. 보호구 종류 및 용도

6.1 안전모의 종류

종류	사용구분	비고
АВ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	
AE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내전압성*
ABE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내전압성

※ 내전압성 : 7,000V 이하의 전압에 견디는 것

6.2 안전화의 종류

종류	성 능 구 분
가죽제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한 것
고무제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내수성 또는 내화학성을 겸한 것
정전기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정전기의 인체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
발등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 및 발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
절연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저압의 전기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
절연장화	고압에 의한 감전을 방지 및 방수를 겸한 것
화학물질용 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보호구안전인증고시 [별표2] 참고)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05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4 / 12	

6.3 안전장갑의 종류

종류	사용구분
내전압용 절연장갑	고압에 의한 감전을 방지 및 방수를 겸한 것
유기화학물용 안전장갑	유기용제와 산·알칼리성 화학물질 접촉 위험으로부터 손을 보호하고 내수성 또는 내화학성을 겸한 것

6.4 방진마스크의 종류(등급)

등급	특급	1급	2급
사 용 장 소	.베릴륨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 등 발생장소 .석면 취급장소	.특급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금속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규소등과 같이 2급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도 무방한 경우는 제외한다)	.특급 및 1급 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배기밸브가 없는 안면부여과식 마스크는 특급 및 1급 장소에 사용 해서는 안 된다.		급 장소에 사용

6.5 방독마스크의 종류

종류	시험가스
유기화합물용	시클로헥산(C ₆ H ₁₂) 디메틸에테르(CH ₃ OCH ₃) 이소부탄(C ₄ H ₁₀) (보호구안전인증고시 [별표5] 참고)
할로겐용	염소가스 또는 증기(Cl ₂)
황화수소용	황화수소가스(H ₂ S)
시안화수소용	시안화수소가스(HCN)
아황산용	아황산가스(SO ₂)
암모니아용	암모니아가스(NH₃)

6.6 송기마스크의 종류 및 등급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05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5 / 12

종류	등급		구분		
	폐력흡인형		안면부		
호스마스크	송풍기형	전동	안면부, 페이스실드, 후드		
	ਰਿਲਾਂ/18	수동	안면부		
일정유		우량형	안면부, 페이스실드, 후드		
에어라인마스크	디맨드형		안면부		
	압력디맨드형		안면부		
복합식 디맨드형		드형	안면부		
에어라인마스크	압력디맨드형		안면부		

6.7 전동식 호흡보호구의 종류

종류	사용구분
전동식 방진마스크	분진 등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효율 여과재를 전동장치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
전동식 방독마스크	유해물질 및 분진 등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효율 정화통 및 여과재를 전동장치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
전동식 후드 및 전동식보안면	유해물질 및 분진 등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효율 정화통 및 여과재를 전동장치에 부착하여 사용함과 동시에 머리, 안면부, 목, 어깨부분까지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6.8 안전대의 종류

종류	사용구분
벨트식 안전그네식 -	1개 걸이용
	U자 걸이용
	추락방지대
	안전블록

6.9 보안경의 종류

종류	사용구분
자외선용	자외선이 발생하는 장소
적외선용	적외선이 발생하는 장소
복합용	자외선 및 적외선이 발생하는 장소
용접용	산소용접작업등과 같이 자외선, 적외선 및 강렬한 가시광선이 발생하는 장소



	TIO TIII 1/ 51 01 05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05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6 / 12

6.10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의 종류

종류	등급	기호	성능	비고
귀마개	1종	EP-1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하는 것	귀마개의 경우 재사용 여부를
TI-17	2종 EP-2	주로 고음을 차음하고 저음(회화음영역) 은 차음하지 않는 것	제조특성으로 표기	
귀덮개	-	EM		

7. 개인보호구의 착용 및 유지·관리

7.1 착용 기준

- 1) 근무장소 출입 시에는 필요시 제공하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2) 기타 당해작업 중 필요에 따라 지급되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한다.

7.2 착용 의무

모든 근로자는 지급된 보호구가 필요한 작업 수행 시 반드시 착용할 의무가 있으며,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7.3 개인보호구 사용에 관한 교육·훈련

- 1) 개인보호구를 정확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왜 필요한지, 언제 사용되고, 대체 되어야 하는지, 그것의 한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2)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근로자가 이것을 확실히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7.4 개인보호구의 유지·관리

- 1) 개인보호구를 지급받은 근로자는 착용 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 예) 건조하고 깨끗한 벽장에 보관하고 혹은 눈 보호대 같은 작은 물품들의 경우 에는 상자에 보관
- 2) 청결하고 보수가 잘 되어 있어야 하며, 제조자가 교환 시기 및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는 경우 제조자의 유지관리사항을 따라야 한다.(파손 및 변형 시 즉시 지급)
- 3) 단순한 유지보수는 착용자 자신이 이행할 수 있으나 보다 복잡한 수리 등은 전문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05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7 / 12
	제·개정일자 개정차수

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7.5 청구 및 반납

모든 보호구의 청구, 검수, 폐품 반납은 각 사업장(부서)의 관리감독자에게 한다. 다만, 신규 보호구의 구입, 보호구의 변경 등에 따른 보호구 선정은 안전관리전담부서가 해당 관리감독자 또는 각 사업부서장과 협의 후에 행한다.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05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8 / 12

[양식]

工工工 八日刊会	보호구	구 지	ᆸ급ᄄ	ㅐ짓
----------	-----	-----	-----	----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보호구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며, 필요한 작업 수행 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성명	지급 보호구 종류				지급일	илен
00					시ㅂㄹ	서명